

특수관계인 거래 공시와 조세회피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를 중심으로-

최가영** · 이우중*** · 노희천****

〈요 약〉

특수관계인 거래는 일방에 유리하도록 계약을 설정할 수 있고 외부 주주에 의한 감시와 통제를 덜 받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거래는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주주와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기업집단 내 부당내부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각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되는 금융위원회 공시(‘금융위 공시’)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공정위 공시’) 규정을 두고 있다. 금융위 공시는 재무제표 주석에 특수관계인 유무와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특수관계 거래 규모를 공시하도록 하며, 공정위 공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관계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거래목적 및 거래금액 등을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공시는 금융위 공시와 그 목적과 방법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직접 공시 정보를 수집해야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 연구들이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문헌에서 주로 다룬 금융위 공시에 의한 특수관계인 거래와 더불어 수작업으로 모은 특수관계인 거래에 관한 공정위 공시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위 공시에 의한 특수관계인 매출·수익과 매입·비용을 통제한 후에도 특수관계인 거래에 관한 공정위 공시 건수가 많을수록 기업의 조세회피수준이 높아짐을 발견하였다. 기업의 조세회피 측정치는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모형에 의한 조세회피 측정치와 회계상 유효세율, 현금유효세율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금융위 공시와 공정위 공시는 조세회피에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는 특수관계인 거래라는 비세무정보 공시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분야의 관련성을 확장하였다는 공헌점이 있다. 또한 기업의 조세회피 수단을 규명했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주제어〉 특수관계인 거래, 조세회피, 공시, 규제

* 본 연구의 개선을 위하여 많은 조언을 주신 고윤성, 박희진, 선우희연 (토론자) 교수님과 2019년 춘계 세무학회 참석자들에 감사사를 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gychoi@snu.ac.kr, 주저자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woojong@snu.ac.kr, 교신저자

****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rhc0401@ssu.ac.kr, 공동저자

논문접수일 2020년 2월 3일 게재확정일 2020년 2월 24일

I. 서 론

본 연구에서는 특수관계인 거래 감시목적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규정에 따른 기업공시가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특수관계인 거래는 일방 또는 상호간의 영향력이나 내부적인 관련성이 존재하는 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한다. 특수관계인 거래는 일방에게만 유리하도록 거래를 구성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다수의 계열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의 경우 기업 간의 매출·매입이나 자금 거래 등을 이용하여 특수관계인 거래를 하기에 용이하다. 하지만 특수관계인 거래를 별도로 공시하지 않는 경우 외부 주주는 거래의 실질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 즉, 특수관계인 거래는 내부화(internalize)된 계약의 특성으로 정보비대칭을 심화시켜 경영자 혹은 지배주주로 하여금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할 유인이 있다(Jensen and Meckling 1976). 이러한 유인에 기인하여 특수관계인 거래는 특정 계열사를 지원하거나(propping), 지배주주 혹은 경영자의 사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인 행동(tunneling)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Jian and Wong 2010 ; Jiang et al. 2010 ; Jian and Wong 2003 ; Johnson et al. 2000 ; Chang and Hong 2000).

기업집단은 특수관계인 거래의 내부화(internalization)를 통하여 기업집단 전체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억제 할 목적으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있다.¹⁾ 즉, 계열사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은 특수관계인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유인과 능력이 모두 존재하고, 이를 방지하고자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수관계인 거래의 경우 실질에 따라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수관계인 거래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주로 계열사 간 세율차이에 기인한다. 즉,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 간에도 소득수준, 결손금의 크기 등에 따라 직면하는 한계세율 역시 상이하고 따라서 특수관계인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는 기업집단 내 고세율 기업에서 저세율 기업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최원욱 외(2011)는 실증적으로 특수관계인 거래가 많을수록 조세회피 역시 증가하며, 특히 고세율 기업에서 이러한 성향이 나타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특수관계인 거래는 외부 주주가 그 실질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업의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해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는 규정(이하 ‘금융위 공시’)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이하 ‘공정위 공시’)을 두고 있다.²⁾³⁾ 금융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 우리나라의 공시제도는 기관별 공시목적에 따라 금융위 공시, 공정위 공시, 거래소 공시로 크게 구분된다. 금융위 공시는 상장기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증권발행 기업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보고서와 같은 정기공시와 지분공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거래

위 공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에 따라 회계기간 중 특수관계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매출·매입과 기타 수익·비용 거래의 금액, 채권·채무 잔액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보고하도록 한다. 공정위 공시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이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에 거래금액과 목적, 계약상의 조건 등을 수시로 공시도록 하는 규정이다. 우리나라의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금융위 공시에 의한 특수관계인 거래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공시의 대상이 되는 기업 및 거래의 규모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정위 공시의 의한 특수관계인 거래의 중요성 역시 상당하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에서 2017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위 공시와 공정위 공시에 의한 특수관계인 거래 공시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되는 특수관계인 매출·수익 거래와 매입·비용 거래에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수작업으로 수집한 기업의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공정위 공시 자료를 이용한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금융위 공시에 의한 특수관계인 거래를 통제 한 후에도 공정위 공시에 의한 특수관계인 거래는 기업의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양(+)의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공시에 의한 특수관계인 거래는 매출·수익 거래와 매입·비용 거래가 조세회피에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위 공시와 공정위 공시를 상호작용 시켜본 결과, 두 종류의 공시는 조세회피에 뚜렷한 상호 연관성을 지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본 연구는 공시 분야의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재무회계 분야에서는 빈번한 공시가 기업행태를 바꾼다는 연구결과(Jo and Kim 2007 ; Kraft et al. 2018)를 보고하여 왔으나, 세무당국이 주 이해관계자가 되는 재무회계 분야의 연구에서는 공시의 중요성이 의미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비세무정보의 공시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분야의 관련성을 확장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회피 수단을 규명하는 데 공헌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매출·매입 거래뿐만 아니라 자금거래를 비롯한 다른 종류의 특수관계인 거래 역시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수 있는 개연성을 제공하여 향후 연구들의 초석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발견을 소

소 공시는 상장기업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시공시, 자율공시 등을 의미한다. 공정위 공시는 불공정 내부거래 등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집단에 소속되는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공시와 기업집단 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등의 의무가 있다(금융감독원 2016).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되는 특수관계인 거래는 금융위 공시의 일종인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므로 앞으로의 논의에서 ‘금융위 공시’로 나타내고, 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는 ‘공정위 공시’로 나타내기로 한다.

- 3) 용어의 경우 우리나라 세법과 공정위 공시에서는 ‘특수관계인’이라고 지칭하고, 금융위 공시에서는 ‘특수관계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정위 공시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이라고 표현한다.

개하고 가설을 설정한다. 제Ⅲ장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모형을 소개하고 표본의 수집과정과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제Ⅴ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 설정

1. 특수관계인 거래

가. 특수관계인 거래의 공시 규정

우리나라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특수관계인 거래의 경우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거래 공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해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금융위 공시’)과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행할 경우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공정위 공시’)이 있다. 금융위 공시와 공정위 공시는 제정 목적에 차이가 있고 그 대상이 되는 기업과 거래도 다르다.

우선 금융위 공시는 K-IFRS를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기업은 재무제표 주석에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특수관계인 거래금액과 회계기간말 현재 채권·채무 잔액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⁴⁾ K-IFRS 제1024호에서는 특수관계인의 유무와 특수관계인 거래 규모가 기업의 전체 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특수관계인 거래는 특수관계가 아니었다면 성사되지 않았을 거래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러한 특수관계인 거래의 형태를 비롯한 구체적인 조건들은 제3자와의 거래와 상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기업의 다른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K-IFRS에서는 특수관계인거래가 없어도 특수관계 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금융위 공시 따른 특수관계인 거래는 재무제표 주석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사업보고서제출대상기업은 모두 공시의 대상이 된다.

한편 공정위 공시는 금융위 공시보다 대상 기업이 제한적이지만 공시가 수시로 발생하고 그 내용도 더 자세하다. 특수관계인 거래의 공정위 공시는 2000년 4월 1일부터 도입되었는데, 공정거래법 제11조의2에 따라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⁵⁾(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

4)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전에는 기업회계기준(K-GAAP) 제20호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K-IFRS와 비교하여 관련 회계기준에 차이는 없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그 중에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공정

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과 대규모 거래⁶⁾를 행할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정위 공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만이 공시의무가 있으므로 그 대상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금융위 공시에 비해 공정위 공시는 특수관계인 거래를 자금의 제공/거래, 유가증권의 제공/거래,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거래 등으로 더욱 세분화하여 상세히 보고한다. 또한 금융위 공시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해 재무제표 보고 시에 한꺼번에 공시됨에 반해, 공정위 공시는 거래 발생 시마다 이루어진다는 차이도 있다. 이는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공정위 공시의 목적이 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기업집단들의 부당한 내부거래로 경쟁력이 부족한 계열회사에 자원을 이전하면서 우량한 계열회사가 부실화되는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집단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관계인 거래는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나.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선행연구

특수관계인 거래는 기업이 계약의 상대방과 거래를 내부화(internalization)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거래와 다른 특성을 지닌다. Coase(1937)에 따르면 거래비용의 존재로 인해 개별적으로 거래하는 것 보다 기업을 구성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따라서 외부와의 거래비용이 과다할 경우 기업은 다른 개별 경제주체와 거래하는 대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정보비대칭이 존재할 경우 제3자와 계약하는 것 보다는 특수관계인과의 계약을 통해 거래를 내부화 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 더불어 매출·매입과 같은 영업거래 뿐만 아니라 기업은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를 통해 외부자금조달비용보다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내부자금시장의 존재는 기업집단 존재의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특수관계인 거래는 계약의 일방에게만 이익이 되도록 구성함으로써 기업집단 내 propping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Jian and Wong 2010 ; Chang and Hong 2000), 경영자 혹은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tunneling 행위로 악용될 수 있다(Jiang et al. 2010 ; Jian and Wong 2003 ; Johnson et al. 2000). 최정호(2010)는 관계회사 매출과 신용제공이 기업집단 전체의 가치 제고 보다는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특수관계인 거래는 제3자와의 거래와 달리 외부 투자자들이 거래의 실질을 명확히 알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에 기인해 특수관계인 거래는 기업 정보의 외부 이용자와의 정보비대칭을 더욱 심

거래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법 제11조의2)와 기업집단현황(법 제11조의4),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법 제11조의3)을 공시하고 주식소유현황(법 제13조)을 신고해야 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추가적으로 상호출자금지(법 제9조), 순환출자금지(법 제9조의2), 채무보증금지(법 제10조의2),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법 제11조) 등이 적용된다.

6)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8에서는 공시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를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규정한다.

화시켜 대리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Jensen and Meckling 1976).

우리나라의 특수관계인 거래 관련 연구는 대리인 비용의 관점에서 특수관계인 거래와 이익조정, 기업 가치와의 연관성, 재무분석가와의 관계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대다수이다. 이익조정과 관련된 과거 연구들은 특수관계인 거래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발생액 이익조정(김지홍과 우용상 2008)과 실제이익조정(김은 2013)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장기간의 특수관계인 자료를 수작업으로 수집하여 분석한 최근의 연구(고종권 외 2019)에서는 특수관계인 거래가 많은 기업들은 재량적 발생액보다 실제이익조정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보영과 박종찬(2014)은 특수관계인 거래의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자기자본비용이 높아지고, 이러한 결과는 비정상 특수관계 거래의 증가에 주로 기인함을 발견했다. 전성일과 배창현(2015)은 특수관계인 거래가 많을수록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위험 프리미엄이 증가해 타인자본비용이 상승함을 보여주었다. 특수관계인 거래 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회계이익에 대한 추가관련성이 낮게 나타난다(김영화 2012)는 연구와 재무분석가의 예측오차가 증가한다(고윤성 외 2011)는 연구 역시 존재한다.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정보비대칭을 줄이고 회계정보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경우 K-IFRS와 공정거래법 등에서 특수관계인 거래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태동 외(2016)는 특수관계인 거래의 규모에 따라, 또한 거래로 인한 손익여부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거래 공시의 수준에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 거래 규모가 클수록 공시수준이 감소하는데, 특히 특수관계인 거래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경우에만 공시수준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해 재무제표 주석을 통한 금융위 공시와 더불어 공정위 공시를 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은 이러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특수관계인 거래 관련 연구에서는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되는 특수관계인 거래인 금융위 공시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김지홍과 우용상 2008 ; 고윤성 외 2011 ; 최원욱 외 2011 ; 기은선 2014 ; 이형배와 전규안 2016 ; 외 다수). 이는 금융위 공시는 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일반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TS2000 등을 통해 특수관계거래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도 금융위 공시에 의한 특수관계 거래 연구를 용이하게 했을 것이다. 반면 공정위 공시에 따른 특수관계인 거래는 그동안 국내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이는 공정위 공시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는 제한된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공시 건별로 자료를 수작업으로 모아야 한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2. 특수관계인 거래와 조세회피

특수관계인 거래는 일방에 유리하도록 계약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집단 전체의 조세 부담을 절감하도록 매출·매입 거래나 자본 거래 등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 선행연구

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거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조세회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욱 외(2011)는 2000-2008년 동안 한국증권거래소에 계속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무제표 주식에 나타난 특수관계인 거래 규모가 클수록 Desai and Dharmapala(2006)가 제안한 조세회피 측정치의 수준이 증가함을 발견했다. 또한 조세부담이 높은 기업들과 소유경영자지배 기업에서 특수관계인 거래와 조세회피의 연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은선(2014)은 2002-2011년 동안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특수관계 거래와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조세회피측정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기업 간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높을수록 과세당국의 모니터링이 용이해져 특수관계인 거래와 조세회피의 양(+)의 관계가 완화됨을 발견하였다. 이형배와 전규안(2016)은 2006-2012년 동안 유가증권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특수관계인 거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방법론으로 측정한 조세회피수준과 현금유효세율(Cash ETR)과 재무유효세율(Gapp ETR)로 측정한 조세회피수준이 모두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조세회피 유인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종업계 보다 소득률 차이가 큰 기업일수록 특수관계인 거래와 조세회피의 관계가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주요 공시는 크게 일반적인 기업이 회계기간 말 재무제표 주식에 공시하는 금융위 공시와 대규모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때 마다 공시하는 공정위 공시로 구분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의 경우 모두 재무제표 주식에 특수관계인 거래를 공시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공정위 공시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 공시와 공정위 공시는 그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르다는 점 외에도 공시의 목적과 방법 역시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금융위 공시가 외부주주에 대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공정위 공시는 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 공시가 기업 조세회피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두 종류의 공시에 의한 특수관계인 거래와 조세회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특수관계인 매출 및 수익과 매입 및 비용 거래를 합한 금액을 분석하지만, 고종권 외(2019)에서 발견한 바와 같이 특수관계인 매출 및 수입과 매입 및 비용은 서로 상이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관계인 거래를 매출·수익 거래와 매입·비용 거래로 세분화하여 나타낸다.

가설 :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에 의해 공시되는 특수관계인 거래 건수가 많을수록 특수관계인 거래와 조세회피행위의 관계는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III. 연구방법론

1. 주요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의 대응치로 3가지를 이용하였다. 우선 Desai and Dharmapala(2006)가 제시한 조세회피측정치(*TS* ; Tax Sheltering)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 ; Book-Tax Difference) 중 이익조정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측정된다. 기업은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계이익보다 과세소득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를 조세회피행위의 측정치로 사용할 수 있다⁷⁾. 그러나 조세회피유인 외에도 회계이익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이익조정유인 역시 *BTD*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Desai and Dharmapala(2006)는 *BTD* 중 이익조정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기업의 조세회피측정치로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식(1)에 따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를 총발생액에 회귀시켜 그 잔차를 계산한다. Desai and Dharmapala(2006)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도 변함이 없는 기업의 고정효과(fixed effect)를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따라서 식(1)의 잔차는 각 기업 내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조세회피행위를 의미한다. *BTD* 계산을 위한 과세소득은 개념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의미하지만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최원욱 외(2011)와 같이 법인세부담액을 최고법인세율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법인세부담액은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법인세비용에 이연법인세자산 변동액을 가산하고 이연법인세부채 변동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BTD_{it} = \beta_0 + \beta_1 TACCR_{it} + \varepsilon_{it} \quad (1)$$

<i>BTD</i>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기초총자산 ;
회계이익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과세소득	= 법인세부담액/최고법인세율 ;
법인세부담액	= 법인세비용 + (기말 이연법인세자산 - 기초 이연법인세자산) - (기말 이연법인세부채 - 기초 이연법인세부채) ;
<i>TACCR</i>	= 총발생액/기초총자산 ;
총발생액	= 당기순이익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액.

또한 조세회피 논문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유효세율 역시 조세회피측정치로 이용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회계상 유효세율(*Gaap_ETR*)과 법인세부담액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현금유효세율(*Cash_ETR*) 두 가지를 이용했다. 해석의 편의를 위해 유효세율에 (-1)을 곱해서 수치가 커질수록 조세회피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유효세율은 세전이익 대비 세부담 수준을 나타내므로 모든 세금절감액이 반영된 가장 포

7) 최기호 (2018)에 따르면 조세회피행위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TD*)는 유효세율을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측정치이다.

괄적인 조세회피추정치지만, 분모인 세전이익의 크기에 따라 유효세율의 크기가 극단적으로 변동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최기호 2018).

특수관계인 거래 공시와 관련된 변수는 크게 금융위 공시에 의한 변수와 공정위 공시에 의한 변수로 구분된다. 금융위 공시에 의한 변수는 고종권 외(2019)에서와 같이 매출액에서 특수관계인 매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RPTRAN1*)과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인 매입·비용(*RPTRAN2*)을 이용하였다. 공정위 공시에 의한 변수는 당기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공정위 공시의 건수(*RPT_fit*)를 이용하였다. 공정위 공시 관련 변수의 경우 금액 대신 건수를 이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정위 공시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관계인 거래가 발생할 때 마다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시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특수관계인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는 재무제표 주식에 의한 특수관계인 거래 공시와 차별되는 정보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 공시에 의한 특수관계인 거래는 기술이전, 담보제공을 비롯해 출자, 자금대여 등 다양한 거래 유형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거래들은 금액으로 일괄하여 측정할 경우 개별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왜곡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정위 공시의 경우 공시 건수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인 거래의 중요성을 측정하였다.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공정위 공시에 의한 특수관계인 거래가 금융위 공시에 의한 특수관계인 거래에 더해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식(2)와 두 종류의 공시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호작용변수를 포함한 식(3)을 설정했다. 아래 첨자 i 는 회사, t 는 연도를 나타낸다.

$$\begin{aligned} Tax_Avoidance_{it} = & \beta_0 + \beta_1 RPTRAN1_{it} + \beta_2 RPTRAN2_{it} + \beta_3 RPT_fit_{it} + \beta_4 SIZE_{it} + \beta_5 LEV_{it} \\ & + \beta_6 DTE_{it} + \beta_7 ROA_{it} + \beta_8 INV_{it} + \beta_9 CFO_{it} + \beta_{10} MARKET_{it} \\ & + YEAR\ FE + IND\ FE + \varepsilon_{it} \end{aligned} \quad (2)$$

$$\begin{aligned} Tax_Avoidance_{it} = & \beta_0 + \beta_1 RPTRAN1_{it} + \beta_2 RPTRAN2_{it} + \beta_3 RPT_fit_{it} + \beta_4 RPTRAN1_{it} * RPT_fit_{it} \\ & + \beta_5 RPTRAN2_{it} * RPT_fit_{it} + \beta_6 SIZE_{it} + \beta_7 LEV_{it} + \beta_8 DTE_{it} + \beta_9 ROA_{it} \\ & + \beta_{10} INV_{it} + \beta_{11} CFO_{it} + \beta_{12} MARKET_{it} + YEAR\ FE + IND\ FE + \varepsilon_{it} \end{aligned} \quad (3)$$

$Tax_Avoidance$ = 조세회피행위 측정치 ;

TS = Desai and Dharmapala(2006)에 의한 Tax Sheltering 측정치 ;

$Gaap\ ETR$ = $(-1) \times$ 법인세비용/세전이익 ;

$Cash\ ETR$ = $(-1) \times$ 법인세부담액/세전이익 ;

$RPTRAN1$ = 특수관계인 매출·수익/매출액 ;

$RPTRAN2$ = 특수관계인 매입·비용/매출액 ;

<i>RPT_fic</i>	= (1 +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공정위 공시 건수)의 자연로그 값 ;
<i>SIZE</i>	= 기초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
<i>LEV</i>	= 총부채/기초총자산 ;
<i>DTE</i>	= 이연법인세비용/기초총자산 ;
<i>ROA</i>	=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
<i>INV</i>	=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증감액 + 감가상각비 + 당기총연구개발비)/기초총자산 ;
<i>CFO</i>	= 영업활동현금흐름/기초총자산 ;
<i>MARKET</i>	= 코스피 기업일 경우 0, 코스닥 기업일 경우 1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식(2)와 식(3)에서 종속변수는 Desai and Dharmapala(2006)에 따른 조세회피측정치(*TS*)와 회계 유효세율(*Gaap_ETR*) 및 현금 유효세율(*Cash_ETR*)이 이용되었다. 유효세율에 (-1)을 곱했으므로 *TS* 뿐만 아니라 *Gaap_ETR*와 *Cash_ETR*의 값이 클수록 조세회피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식(2)의 관심변수는 매출액에서 특수관계인 매출 ·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RPTRAN1*과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인 매입 · 비용을 나타내는 *RPTRAN2*이다. 특수관계인 거래 규모가 클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높다면 *RPTRAN1*과 *RPTRAN2*의 계수는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식(3)의 관심변수는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공정위 공시의 건수를 나타내는 *RPT_fic*와, 금융위 공시와 공정위 공시의 상호작용 변수인 *RPTRAN1*RPT_fic* 및 *RPTRAN2*RPT_fic*이다.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공정위 공시가 조세회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면, 금융위 공시가 나타내는 특수관계인 거래 규모를 통제한 후에도 *RPT_fic*의 계수는 양(+)의 값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정위 공시 건수가 많을수록 특수관계인 거래와 조세회피와의 관계가 강하게 나타난다면 *RPTRAN1*RPT_fic* 및 *RPTRAN2*RPT_fic*의 계수값은 모두 양(+)일 것으로 예측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하였다. 우선 기업 규모가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총자산의 자연로그값(*SIZE*)을 통제하였다. 규모가 큰 기업은 가시성으로 인해 더 많은 규제의 영향을 받는 등 정치적비용(*political cost*)이 높으므로 조세회피를 덜 할 것이라는 입장이 있다(Zimmerman 1983 ; 박종국과 홍영은 2009). 이와 반대로 기업의 규모는 더욱 정교하고 다양한 세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조세회피와 양(+)의 연관성이 있다는 입장도 존재한다(Siegfried 1974 ; 김진희와 정재욱 2006). 부채비율(*LEV*)이 높은 기업은 이자비용으로 인한 조세절감 혜택 덕분에 조세회피에 대한 유인이 적을 수 있으므로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Graham and Tucker 2006). 또한 미래의 조세부담이 현재의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연법인세비용(*DTE*)을 통제하였다. 수익이 많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과세소득이 많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누진세율을 부담하므로 세부담 수준이 높다. 따라서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더 많은 조세회피행위를 할 유인이 있으므로 기업의 수익성(*ROA*)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우리나라 세법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업의 투자활동에 다양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한다. 따라서 투

자수준이 높은 기업의 조세절감으로 인한 조세회피 유인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 수준(*INV*)을 통제하였다. 또한 기업의 현금흐름 수준은 직접적인 현금의 순유출을 야기하는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영업현금흐름(*CFO*)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도 및 산업별로 변화하는 조세회피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연도(*year fixed effects*)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따른 산업고정효과(*industry fixed effects*)를 포함하였으며 기업 단위로 클러스터링을 적용하였다(Petersen 2009).

3. 표본의 선정 및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상장폐지 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표본을 선정하였다.

- (1) Dataguide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석에 필요한 재무자료가 입수 가능한 기업
- (2) TS2000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수관계인 거래 자료가 수집 가능한 기업
- (3) 총자산과 추정세무보고이익이 양(+)의 값을 가지는 기업
- (4)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5) 12월 결산 기업

총자산과 추정세무보고이익이 음(-)인 기업은 조세회피의 유인이 적을 수 있으므로 표본에 포함하지 않았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특수관계인 거래의 구조가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유인 역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12월 결산 외의 기업 역시 공시 규정의 도입과 세율 변화 등의 시점이 상이하므로 제외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재무 자료와 특수관계인 거래 자료가 결측된 기업-연도를 제외하고, 최종 표본은 15,822 기업-연도로 구성되어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 미칠 수 있는 극단치의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해 분석에 이용된 모든 연속변수에 대해 상·하위 1% 수준을 벗어나는 관측치를 상·하위 1% 수준으로 조정(winsorization)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표본의 선정과정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표본선정과정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비금융 기업-연도 (fiscal year 2001-2017)	32,762
제외 :	
12월 결산법인 외의 기업-연도	(1,387)
총자산과 추정과세소득이 음(-)인 기업-연도	(9,356)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결측된 기업-연도	(6,197)
최종표본기업-연도 (fiscal year 2001-2007)	15,822

IV.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표 2>는 식(2)와 식(3)을 이용한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준다. Desai and Dharmapala(2006)에 의한 조세회피 측정치(*TS*)는 계산구조 상 회귀식의 잔차이므로 그 평균은 0이지만, 후에 표본 구성에 따라 평균(중간값)이 $-0.01(0.00)$ 로 조정되었다. 표본의 회계상 유효세율(*Gaap_ETR*)과 현금유효세율(*Cash_ETR*)의 평균은 각각 0.17과 0.19로 현금유효세율이 회계상 유효세율보다 다소 높게 관측되었다.⁸⁾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Variables	N	Mean	Std	Min	Q1	Median	Q3	Max
<i>TS</i>	15,822	-0.01	0.08	-0.34	-0.03	0	0.03	0.19
<i>Gaap_ETR</i>	15,822	0.17	0.25	-1	0.1	0.21	0.27	1
<i>Cash_ETR</i>	15,822	0.19	0.28	-1	0.06	0.2	0.29	1
<i>RPTRAN1</i>	15,822	0.13	0.22	0	0	0.03	0.14	1
<i>RPTRAN2</i>	15,822	0.09	0.14	0	0	0.03	0.12	0.74
<i>RPT_ftc</i>	15,822	0.27	2.69	0	0	0	0	150
<i>SIZE</i>	15,822	18.86	1.44	16.31	17.88	18.6	19.58	23.52
<i>LEV</i>	15,822	0.43	0.23	0.04	0.25	0.42	0.58	1.19
<i>DTE</i>	15,822	0	0.01	-0.05	-0.01	0	0	0.04
<i>ROA</i>	15,822	0.04	0.1	-0.39	0.01	0.04	0.09	0.35
<i>INV</i>	15,822	0.04	0.07	-0.1	0	0.02	0.06	0.35
<i>CFO</i>	15,822	0.07	0.1	-0.26	0.01	0.06	0.12	0.41
<i>MARKET</i>	15,822	0.55	0.5	0	0	1	1	1

1) 변수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TS* : Desai and Dharmapala(2006)에 의한 Tax Sheltering 측정치 ;
- Gaap_ETR* : 법인세비용/세전이익 ;
- Cash_ETR* : 법인세부담액/세전이익 ;
- RPTRAN1* : 특수관계인 매출 · 수익/매출액 ;
- RPTRAN2* : 특수관계인 매입 · 비용/매출액 ;
- RPT_ftc* : $(1 + \text{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공정위 거래 건수})$ 의 자연로그 값 ;

8) 해석의 편의를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다변량 분석에서는 유효세율에 (-1) 을 곱했지만, 본 기술통계량에서는 (-1) 을 곱하기 전의 수치를 나타낸다.

SIZE : 기초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
LEV : 총부채/기초총자산 ;
DTE : 이연법인세비용/기초총자산 ;
ROA :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
INV :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증감액+감가상각비+당기총연구개발비)/기초총자산 ;
CFO : 영업활동현금흐름/기초총자산 ;
MARKET : 코스피 기업일 경우 0, 코스닥 기업일 경우 1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이는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세전이익 대비 17%의 법인세비용과 19%의 법인세부담액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수관계인 거래를 매출·수익(*RPTRAN1*)과 매입·비용(*RPTRAN2*)으로 세분화할 경우 평균값이 각각 13%와 9%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공정위 공시 건수(*RPT_fit*)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이 0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정위 공시가 대규모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⁹⁾ 기타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은 선행연구와 유사하므로 해석은 지면상 생략한다.

<표 3>은 본 연구에 쓰인 종속변수와 주요 관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상관관계에서는 조세회피와 특수관계 거래 간에 뚜렷한 양(+)의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관관계는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더욱 정확한 분석을 위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9) 분석에서는 공정위 공시 건수에 1을 더한 값의 자연로그를 취했지만, 본 기술통계량에서는 로그를 취하기 전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i>TS</i>	1												
[2] <i>Gaap ETR</i>	-0.066***	1											
[3] <i>Cash ETR</i>	-0.013*	0.367***	1										
[4] <i>RPT_RANI</i>	-0.006	0.019**	0.022***	1									
[5] <i>RPT_RAN2</i>	-0.052***	-0.011	0.007	0.230***	1								
[6] <i>RPT_fic</i>	-0.007	-0.014*	-0.003	0.074***	0.047***	1							
[7] <i>SIZE</i>	-0.016	-0.106***	-0.071***	0.136***	0.146***	0.436***	1						
[8] <i>LEV</i>	-0.129***	0.008	0.022***	-0.042***	0.036***	0.052***	0.115***	1					
[9] <i>DTE</i>	0.418***	-0.101***	0.114***	-0.010	-0.005	-0.010	0.019**	-0.050***	1				
[10] <i>ROA</i>	0.763***	-0.171***	-0.183***	-0.009	-0.050***	-0.013	-0.025***	-0.142***	0.138***	1			
[11] <i>INV</i>	0.142***	0.048***	0.027***	-0.034***	-0.035***	-0.002**	-0.133***	0.179***	-0.044***	0.208***	1		
[12] <i>CFO</i>	0.421***	-0.090***	-0.065***	-0.030***	-0.040***	0.017***	0.014*	-0.127***	0.066***	0.500***	0.183***	1	
[13] <i>MARKET</i>	-0.002	0.112***	0.090***	-0.093***	-0.145***	-0.199***	-0.584***	-0.054***	-0.032***	0.007	0.157***	0.024***	1

1) 실증분석에 이용된 변수들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나타냄

2) 변수들의 정의는 <표 2>를 참조

3)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다변량 분석

가.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조세회피측정치를 이용한 분석

<표 4>는 금융위 공시에 제시되어 있는 특수관계인 거래와 공정위 공시 건수가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모형에 따른 조세회피 측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열(1)은 식(2)에 따라 금융위 공시($RPTRAN1$, $RPTRAN2$)와 공정위 공시($RPTRAN_fic$)를 각각 포함한 결과이다. 열(1)에서 공정위 공시($RPTRAN_fic$)는 예측한 바와 같이 유의한 양(+)의 계수값(Coef. = 0.002* ; $t=1.82$)을 나타낸다. 즉, 기업은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공정위 공시 건수가 많을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위 공시에 의한 특수관계인 거래 규모를 통제한 후에도 공정위 공시는 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유의한 정보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특수관계인 매출·수익($RPTRAN1$)은 유의하지 않은 음(-)의 계수값을 나타냈고, 특수관계인 매입·비용($RPTRAN2$)은 1% 수준에서 유의한 계수값(-0.010*** ; $t=-2.82$)을 나타냈다. 이는 특수관계인 매출·수익이 증가해도 조세회피 수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특수관계인 매입·비용이 증가하면 오히려 조세회피 수준이 하락함을 의미한다. 특수관계인 거래가 많을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반대의 결과이며, 특수관계인 거래와 조세회피를 분석한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은 결과이다.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표본 구성 및 표본 기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선행연구는 한국증권거래소에 표본기간 동안 계속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거나(최원욱 외 2011) 유가증권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에 이용된 변수상·하위 1% 수준을 truncate(이형배와 전규안 2016)한 특성이 있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의 표본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상장폐지된 기업을 포함하여 유가증권상장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 모두를 표본에 포함했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본 분석의 종속변수인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방법론에 따른 조세회피 측정치(TS)는 분석 방법 및 표본에 따라 다소 민감하게 변화하는 점을 고려하면, 표본의 차이가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열(2)는 식(3)에 따라 금융위 공시와 공정위 공시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교차항($RPTRAN1*RPTRAN_fic$, $RPTRAN2*RPTRAN_fic$)을 포함한 결과이다. 특수관계인 매출·수익과 공정위 공시와의 교차항($RPTRAN1*RPTRAN_fic$)은 유의하지 않은 계수값을 나타냈다. 반면 특수관계인 매입·비용과 공정위 공시의 교차항($RPTRAN2*RPTRAN_fic$)은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계수값을 보였다(Coef. = 0.016** ; $t=2.41$). 이는 특수관계인 거래 중에서도 매입·비용 거래를 하는 기업이 공정위 공시 건수가 많을 경우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표 4〉 금융위 공시와 공정위 공시에 의한 특수관계인 거래가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모형에 따른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Dep. Variable=	TS	
	(1)	(2)
<i>RPTRAN1</i>	−0.001 (−0.21)	−0.001 (−0.32)
<i>RPTRAN2</i>	−0.010*** (−2.82)	−0.011*** (−3.14)
<i>RPTRAN_fic</i>	0.002* (1.82)	−0.000 (−0.21)
<i>RPTRAN1*RPTRAN_fic</i>		0.002 (0.42)
<i>RPTRAN2*RPTRAN_fic</i>		0.016** (2.41)
<i>SIZE</i>	−0.001 (−1.44)	−0.001 (−1.49)
<i>LEV</i>	−0.007*** (−2.77)	−0.007*** (−2.75)
<i>DTE</i>	2.089*** (33.71)	2.088*** (33.69)
<i>ROA</i>	0.548*** (55.60)	0.547*** (55.59)
<i>INV</i>	0.011 (1.07)	0.010 (1.05)
<i>CFO</i>	0.047*** (6.35)	0.047*** (6.34)
<i>MARKET</i>	0.001 (0.57)	0.001 (0.51)
<i>Intercept</i>	−0.135*** (−11.75)	−0.134*** (−11.66)
Observations	15,822	15,822
Adjusted R ²	0.703	0.703
Year FE	Yes	Yes
Industry FE	Yes	Yes
Clustered by	Firm	Firm

1) 변수들의 정의는 <표 2>를 참조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통제변수의 경우 대체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의 규모(*SIZE*)는 유의하지 않은 계수값을 나타냈는데($\text{Coef} = -0.001$; $t = -1.44$), 기업의 규모가 조세회피에 반대되는 방향 모두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정치적비용(*political cost*)이 높아 조세회피를 덜 하는 요인과 많은 자원을 이용하여 더욱 활발히 조세회피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모두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측한 바와 같이 기업의 부채비율(*LEV*)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ext{Coef.} = -0.007^{***}$; $t = -2.77$), 기타 통제변수 역시 대체로 선행연구 및 예측치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 유효세율을 이용한 분석

<표 5>에는 식(2)와 식(3)에 따라 특수관계인 거래와 유효세율로 측정한 조세회피수준의 관계를 나타낸다. 열(1)과 열(2)에서는 법인세비용을 세전이익으로 나눈 회계상 유효세율을 조세회피 수준으로 측정했다. 열 (3)과 열(4)에서는 법인세부담액을 세전이익으로 나눈 현금유효세율로 조세회피를 측정했다. 유효세율은 낮을수록 기업의 조세회피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앞선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모형에 따른 조세회피 측정치와 해석의 일관성을 위해 유효세율에 (-1)을 곱해주었다. 분석 결과 열(4)를 제외한 열(1)~(3)에서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공정위 공시 건수(*RPTRAN_fic*)의 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냈다. 즉 <표 4>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금융위 공시에 의한 특수관계인 거래를 통제한 후에도 공정위 공시는 조세회피에 유의한 정보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매출·수익 거래(*RPTRAN1*)는 유의한 양(+)의 계수값을 나타내, 특수관계인 매출·수익 거래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조세회피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관계인 거래가 증가할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최원욱 외 2011 ; 이형배와 전규안 2016). 반면 특수관계인 매입·비용 거래는 모든 열(1)~(4)에서 유의하지 않은 계수값을 나타내, 유효세율로 측정한 조세회피를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2)와 열(4)에서 특수관계인 매출·수익 거래와 공정위 공시 건수의 교차항(*RPTRAN1*RPTRAN_fic*)은 유의하지 않은 계수값을 나타냈다. 특수관계인 매입·비용 거래와 공정위 공시 건수의 교차항(*RPTRAN2*RPTRAN_fic*)은 열(2)에서 10%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계수값을 보였고, 열(4)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계수값을 보였다. 이는 특수관계인 매입·비용 거래는 단독으로는 조세회피를 증가시키지 않지만, 공정위 공시에 의한 특수관계인 거래가 많을 경우 제한적으로 조세회피 증가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대체로 금융위 공시에 의한 특수관계인 거래와 공정위 공시에 의한 특수관계인 거래 건수는 유효세율로 측정한 조세회피수준에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금융위 공시와 공정위 공시에 의한 특수관계인 거래가 유효세율로 측정한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Dep. Variable=	Gaap_ETR		Cash_ETR	
	(1)	(2)	(3)	(4)
<i>RPTRAN1</i>	0.032*** (2.68)	0.033*** (2.77)	0.035** (2.48)	0.034** (2.38)
<i>RPTRAN2</i>	-0.022 (-1.28)	-0.026 (-1.46)	0.004 (0.22)	0.006 (0.27)
<i>RPTRAN_fic</i>	0.021*** (3.45)	0.019** (2.23)	0.021*** (2.88)	0.021** (2.06)
<i>RPTRAN1*RPTRAN_fic</i>		-0.023 (-1.08)		0.005 (0.22)
<i>RPTRAN2*RPTRAN_fic</i>		0.056* (1.72)		-0.016 (-0.39)
<i>SIZE</i>	-0.018*** (-7.83)	-0.018** (-7.94)	-0.015*** (-5.73)	-0.015*** (-5.67)
<i>LEV</i>	-0.005 (-0.49)	-0.005 (-0.51)	0.019* (1.69)	0.019* (1.69)
<i>DTE</i>	-1.529*** (-5.83)	-1.530*** (-5.84)	3.541*** (12.84)	3.541*** (12.85)
<i>ROA</i>	-0.429*** (-18.46)	-0.430*** (-18.49)	-0.628*** (-25.77)	-0.628*** (-25.76)
<i>INV</i>	0.206*** (5.69)	0.206*** (5.69)	0.194*** (5.24)	0.194*** (5.24)
<i>CFO</i>	-0.028 (-1.23)	-0.028 (-1.22)	0.081*** (3.17)	0.081*** (3.17)
<i>MARKET</i>	0.015** (2.49)	0.015** (2.45)	0.018*** (2.60)	0.018*** (2.60)
<i>Intercept</i>	-0.321*** (-7.34)	-0.317*** (-7.26)	-0.407*** (-8.03)	-0.408*** (-7.99)
Observations	15,822	15,822	15,822	15,822
Adjusted R ²	0.076	0.076	0.086	0.086
Year FE	Yes	Yes	Yes	Yes
Industry FE	Yes	Yes	Yes	Yes
Clustered by	Firm	Firm	Firm	Firm

1) 변수들의 정의는 <표 2>를 참조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V. 결 론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공시에 의한 특수관계인 거래가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해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공정위 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종류의 공시는 그 목적과 방법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상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되는 특수관계인 거래와 더불어 수작업으로 수집한 공정위 공시 자료를 이용하여, 두 종류의 공시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과 서로 다른 공시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2001년에서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했다. 우선 금융위 공시에 의한 특수관계인 거래를 통제한 후에도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공정위 공시가 많을수록 조세회피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 행위의 대용치로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측정치를 사용할 때 뿐만 아니라 회계상 유효세율과 현금유효세율을 이용할 때 역시 공정위 공시와 조세회피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관측되었다. 또한 금융위 공시에 의한 특수관계인 거래는 매출·수익 거래와 매입·비용 거래가 조세회피에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금융위 공시와 공정위 공시를 상호작용 시켜본 결과, 두 종류의 공시는 조세회피에 뚜렷한 상호 연관성을 지니지 않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이 있다. 첫째, 공시 분야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재무회계 분야에서는 빈번한 공시가 기업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존재했으나(Jo and Kim 2007 ; Kraft et al. 2018), 세무회계 분야에서는 이러한 공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특수관계인 거래 공시가 기업의 조세회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공시들 간에도 그 시점과 공시 내용의 상세함 등에 따라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기업의 조세회피 수단을 규명하는 데 공헌점이 있다. 본 연구는 매출·매입 거래뿐만 아니라 자금거래를 비롯한 다른 종류의 특수관계인 거래 역시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수 있는 개연성을 제공하여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본 연구는 분석에 공정위 공시의 건수를 이용하였고, 공시 내의 구체적인 거래 금액 등의 자료는 이용하지 않았다. 또한 공정위 공시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모든 상장기업이 공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비상장기업이라도 공시 의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공정위 공시에 관한 보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고윤성 · 유혜영 · 이명진. 2011. “특수관계자 거래가 재무분석가 예측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40권 제5호 : 1139-1161.
- 고종권 · 박희진 · 이윤경. 2019. “특수관계자 거래와 발생액 및 실제이익조정”. 회계학연구 제44권 제1호 : 71-110.
- 기은선. 2014.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특수관계자 거래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31권 제3호 : 177-211.
- 김 은. 2013. “특수관계자 거래와 실제 활동을 통한 이익조정”. 국제경상교육연구 제10권 제1호 : 61-84.
- 김영화. 2012. “특수관계자 거래와 기업가치”. 국제회계연구 제44권 : 205-222.
- 김지홍 · 우용상. 2008.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이익조정 및 이익반응계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3권 제3호 : 25-59.
- 김진희 · 정재욱. 2006.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3권 제4호 : 97-123.
- 김태동 · 이운아 · 배창현. 2016. “특수관계자 거래와 기업의 공시수준 - 재무제표 주석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제45권 제3호 : 761-793.
- 박보영 · 박종찬. 2014. “특수관계자 거래가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23권 제5호 : 309-347.
- 박종국 · 홍영은. 2009.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세무학연구 제26권 제1호 : 105-135.
- 이형배 · 전규안. 2016. “소득률 차이와 특수관계자 거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1호 : 125-160.
- 전성일 · 배창현. 2015. “특수관계자 거래가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24권 제3호 : 1-31.
- 최기호. 2018. “조세회피와 관련된 세무회계 실증 연구 동향”. 세무학연구 제35권 제4호 : 207-275.
- 최원욱 · 고윤성 · 조정은. 2011. “특수관계자 거래가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8권 제3호 : 9-35.
- 최정호. 2010. “관계회사거래의 정보가치”. 회계저널 제19권 제1호 : 77-105.
- Chang, S. J. and J. Hong. 2000. Economic performance of group-affiliated companies in Korea : Intragroup resources sharing and internal business transac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3) : 429-448.
- Coase, R. 1937.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4 : 386-405.
- Desai, M. A. and D. Daharmapala. 2006.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 powered incentiv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1) : 145-179.

- Graham, J. R. and A. Tucker. 2006. Tax shelters and corporate debt polic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1 : 563–594.
- Jensen, M. and W. Meckling. 1976. Theory of the firm :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 (4) : 305–306.
- Jian, M. and T. Wong. 2003. Earnings management and tunneling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 Evidence from Chinese corporate groups. Working Paper.
- Jian, M. and T. Wong. 2010. Propping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15 (1) : 70–105.
- Jiang, G., C. M. Lee, and H. Yue. 2010. Tunneling through intercorporate loans : The China experienc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98 (1) : 1–20.
- Jo, H., and Y. Kim. 2007. Disclosure frequency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4 : 561–590.
- Johnson, S., R. La Porta, F. Lopez de-Silanes, and A. Shleifer. 2000. Tunneling. *American Economic Review* 90 (2) : 22–27.
- Kraft, A.G., R. Vashishtha, and M. Venkatachalam. 2018. Frequent financial reporting and managerial myopia. *The Accounting Review* 93 (2) : 249–275.
- Petersen, M. A. 2009. Estimating standard errors in finance panel data sets : Comparing approaches.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2 (1) : 435–480.
- Siegfried, J. 1974. Effective average U.S. corporate income tax rates. *National Tax Journal* 27(2) : 58–79.
- Zimmerman, J. L. 1983. Taxes and firm siz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August) : 119–149.

The Relation between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Tax Avoidance

- Evidence from Disclosure Requirement by Fair Trade Commission -

Ga-Young Choi^{*} · Woo-Jong Lee^{**} · Hee Chun Roh^{***}

〈Abstract〉

Related party transactions (RPT) are often made based on discretionary contracts that benefit one party at the cost of the other party, but unlikely subject to strict monitoring of shareholders. These characteristics provide RPT firms with an effective means to engage in tax avoidance. To alleviate such adverse effect of RPT, two regulatory bodies in Korea require firm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RPT. First,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quires firms to disclose in the footnote of financial statements whether they have related parties and how much they trade with those parties in aggregate (FSC disclosure). Second, Fair Trade Commission also requires member firms in business groups to disclose the details of each RPT (FTC disclosure). Although the FTC disclosure may contain incremental information beyond the FSC disclosure, the comparison between two types of disclosures has not been thoroughly studied in the literature.

This study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RPT and tax avoidance, using both FSC and FTC disclosures. We document evidence that FTC disclosure frequency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degree of tax avoidance even after controlling for the RPT magnitude in the financial statements, suggesting its incremental information value. However, we fail to find robust evidence that FTC disclosures interact with FSC disclosures in explaining tax avoidance.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disclosure literature on the relation between non-tax disclosures and tax avoidance.

〈Key words〉 Related party transaction, Tax avoidance, Disclosure, Regulation

* Ph.D. Candid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First Author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Co-author